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병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630 발의연월일: 2021. 7. 21.

발 의 자:서병수・구자근・김형동

류성걸 • 박성민 • 서일준

양금희 • 윤창현 • 전봉민

정경희 · 조경태 · 홍문표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농업협동조합·수산업협동조합·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 여야 하는 의무위탁 대상 선거인 반면,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해당 기관이 그 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위 탁 대상 선거임.

그런데 새마을금고도 농협·수협 및 산림조합과 같이 회원 간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, 회원들을 대상으로 금융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고 볼 수 있음. 이를 고려할 때새마을금고 이사장·중앙회장의 선출 역시 다른 조합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에도, 현행법상 의무위탁 대상 선거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제외되어 있어 선

거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 이에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의무위탁 대상 선 거로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각 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162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중앙회 및"으로 한다.
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1호가목 중 "「농업협동조합법」"을 "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, 「농업협동조합법」"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"중소 기업중앙회,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및"을 "중소기업

제24조제3항제1호 중 "「농업협동조합법」"을 "「새마을금고법」 제18 조제5항제3호에 따라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이사장선거와 「농업협동조합법」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「농업협동조합법」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「농업협동조합법」"을 "「새마을금고법」 제1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와 「농업협동조합법」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「농업협동조합법」"을 "「새마을금고법」, 「농업협동조합법"으로, "조합장선거"를 "조합장선거와 「새마을금고법」 제18조제5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"로 한다.

제30조의2제1항 전단 중 "조합장선거"를 "조합장선거·이사장선거"로, "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회장선거"를 "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「농업협동조합법」 및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의 중앙회장선거"로, "조합운영"을 "조합 또는 금고 운영"으로 한다.

제35조제5항 중 "「농업협동조합법」"을 "「새마을금고법」 에 따른이사장·중앙회장, 「농업협동조합법」"으로 한다.

제36조 중 "「중앙회 또는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"을 "중앙회,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또는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·중 앙회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의 의무위탁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 중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의 의무위탁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 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신청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3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공공단체등"이란 다음 각	1
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단체를 말한다.	
가. 「농업협동조합법」,	가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
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	금고와 중앙회, 「농업협
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	<u>동조합법」</u>
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	
ō}- ㅂ	
나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	나
에 따른 <u>중소기업중앙회,</u>	<u>중소기업중앙회</u>
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	<u>및</u>
금고와 중앙회 및 「도시	
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	
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	
원회	
다. • 라. (생 략)	다.•라. (현행과 같음)
2. ~ 8. (생 략)	2. ~ 8. (현행과 같음)
제24조(선거운동의 주체・기간・	제24조(선거운동의 주체・기간・
방법) ①·② (생 략)	방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은 다	③
음 각 호와 같다.	
1.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45조	1. 「새마을금고법」 제18조제5

제5항제1호, 「수산업협동조 합법」 제46조제3항제1호 및 「산림조합법」 제35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 회 외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 거: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

- 2. <u>「농업협동조합법」</u> 제45조 제5항제1호,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46조제3항제1호 및 「산림조합법」 제35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: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
- 3. 「농업협동조합법」, 「수산 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앙 회장선거,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45조제5항제2호 및 「수산 업협동조합법」 제46조제3항 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: 제25조 · 제28조 · 제29조 ·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른 방법(제30조의 따른 방법은 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다)

항제3호에 따라 회원의 투표
로 직접 선출하는 이사장선거
와 「농업협동조합법」
2. 「 <u>새마을금고법」 제18조제5</u>
항제1호에 따라 총회에서 선
출하는 이사장선거와 「농업
협동조합법
3. 「새마을금고법」, 「농업협
동조합법 <u></u>
<u>조합장선거와 「새</u>
마을금고법」 제18조제5항제2
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
<u>하는 이사장선거</u>

제30조의2(선거일 후보자 소개 > 및 소견발표) ① 제24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장 선거 또는 중앙회장선거에서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"투표관리관등"이라 한다)은 선 거일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선 투표일(제24조제3항제3호에 따 른 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다) 에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투표 소 또는 총회나 대의원회가 개 최되는 장소(이하 이 조에서 "투표소등"이라 한다)에서 선거 인에게 기호순에 따라 각 후보 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 금 조합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 견을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 0분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배정 하여야 하다.

② ~ ⑤ (생 략)

제35조(기부행위제한) ① ~ ④ (생 략)

⑤ <u>「농업협동조합법」</u>, 「수산 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장

제30소의2(선거일 우보자 소개
및 소견발표) ①
<u>조합장</u>
<u>선거 • 이사장선거</u>
<u>제24조제3항제3호에</u>
따른 「농업협동조합법」 및
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의 중앙
회장선거
<u>조합 또는 금고 운영</u>
,
,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35조(기부행위제한) ① ~ ④
(현행과 같음)
⑤ 「새마을금고법」 에 따른
이사장·중앙회장, 「농업협동

·중앙회장과 「산림조합법」 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.

제36조(조합장 등의 축의 부의 저 금품 제공제한) 「농업협동조 합법」,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에 따른 조합・중앙회 또는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(이하 이 조에서 "조합등"이라 한다)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 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 •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의 경비임을 명기 하여 해당 조합등의 명의로 하 여야 하며, 해당 조합등의 대표 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 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.

조합법	
제36조(조합장 등의 축의·부의	
금품 제공제한)	
<u>중앙회,</u> 「산림	-
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또는	-
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	
<u>· 중앙회</u>	